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4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박성훈 · 정동만
임종득 · 백종현 · 이종배
이인선 · 김기현 · 서명옥
정희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·공동주택·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,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·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,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).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취약계층이용시설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제11호 중 “노인요양시설”을 “노인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후단 중 “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을 “취약계층이용시설의 공기질”로 한다.

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6(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약계층이용시설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, 측정대상시설, 측정횟수,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른 시설보다 우선하여 다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약계층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“취약계층이용시설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노인요양시설</u></p> <p>12. ~ 2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<u>노인요양시설</u>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<u>노인여가복지시설</u></p> <p>12. ~ 2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① (생략)</p>	<p>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<신 설>

② -----

-----, -----취약계층이용 시설의 공기질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6(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약계층이용시설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, 측정대상시

